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9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 송옥주・박홍근・한민수

박해철 • 이병진 • 이수진

한정애 · 황명선 · 추미애

전종덕 · 정태호 · 이기헌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(마당개)이 번식 또는 유실·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따라, 정부는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85% 이상 중성화 완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 또한, 유실·유기 등 동물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 또는 기증·분양하는 동물이 개·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실·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, 증가하고 있는 유실·유기 동물로부터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6조

제4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고 유실·유기 동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에 대하여 중성화(中性化)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"중성화(中性化)"를 "중성화"로 한다.

제4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개·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	제16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
	<u>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	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고 유실
	•유기 동물을 관리하기 위하
	여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중
	성화(中性化) 수술을 하거나 중
	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
	있다.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
	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
	식품부렁으로 정한다.
제18조(맹견사육허가 등) ① 등록	제18조(맹견사육허가 등) ①
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	
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	
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맹견사	
육허가를 받아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<u>중성화(中性化)</u> 수술을 할	3. <u>중성화</u>
것. 다만, 맹견의 월령이 8개	
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	
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	
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	

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~ ⑦ (생 략) 제45조(동물의 기증・분양) ① · 제45조(동물의 기증・분양) ① · ② (생략) <신 설>

③ • ④ (생 략)
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시・도지사와 시장・군수・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 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개・고 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 거나 중성화 수술에 드는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.
- <u>④·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)